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9
----------	------

제출연월일: 2025. 12. 5.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 동안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납부규정 삭제 및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

나. 사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다. 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례 감면 삭제
(안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관람권 검인 필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관람권 수탁·대행 규정 삭제(안 제12조)

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안 제13조제2항)

- 무료입장권 발행 → 유보석 지정

바. 문화센터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기강좌 12주 과정 원칙 규정 삭제(안 제15조)

사.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25조(시행규칙) 삭제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3의2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의 규정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2564호, 2025. 10. 30.)

라. 입법예고: 2025. 10. 16. ~ 11. 6.(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제9조의 제목“(특례 감면)”을“(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인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무료입장권을 발행”을 “유보석을 지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의전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위촉하며, 문화의전당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의전당부서의 주무담당”을 “문화의전당 주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u>아니</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u>아니</u>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p> <p>6. (생략)</p>	<p>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 하지 <u>않을</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않은</u> -- -----</p> <p>6.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생략)</p> <p>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u>아니</u>한 때</p>	<p>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않</u> <u>은</u> ----</p>

현 행	개 정 안
<p>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p> <p>2.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p>	<p>나. <u>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u></p> <p>다. <u>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u></p> <p>3. ----- -- <u>경우:</u> -----</p> <p>2. <u>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u></p> <p>가. <u>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u></p> <p>나. <u>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u></p> <p>다. <u>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u></p>

현행	개정안
<p>3. <u>사용예정일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금액</u> 가. <u>30일 전까지 전액 반환</u> 나. <u>10일 전까지 50퍼센트 반환</u></p>	<p><삭 제></p>
<p>제9조(특례 감면) ① <u>각종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극·음악·무용·국악 등 외에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할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u></p>	<p>제9조(감면) <삭 제></p>
<p>② <u>제1항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한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8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면 해당 사용료만 납부한다.</u></p>	<p><삭 제></p>
<p>③ <u>제1항에 따른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범위는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정한다.</u></p>	<p><삭 제></p>
<p>④ (생략)</p>	<p>(현행 제4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u>아니</u> 한다.</p> <p>⑤ (생략)</p>	<p>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않는</u> <u>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생략)</p> <p>②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u>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u>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전산발매는 제외할 수 있다)은 사용할 수 없다.</p> <p>③·④ (생략)</p> <p>⑤ <u>문화의전당은 관람권을 수탁 또는 대행 판매할 수 있다.</u>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2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인을 할 수 있다.</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3조(기획공연 등) ① (생략)</p>	<p>제13조(기획공연 등)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u>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u></p>	<p>② ----- ----- ----- <u>유보석을 지정-----.</u></p>
<p>제15조(개설) ① (생략)</p> <p>② <u>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되, 정기강좌는 12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제15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u>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중구회의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의전당부서의 장으로 한다.</u></p> <p>⑤ <u>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의전당부서의 주무담당이다.</u></p>	<p>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위촉하며, 문화의전당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⑤ ----- ----- <u>문화의전당 주무담당 계장-----</u> -----.</p>
<p>제23조(회의 운영) ① ~ ⑤ (생략)</p>	<p>제23조(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질의(서면-2021-부가-5253 [부가가치세과-1458])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2.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비고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위약금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 속: 문화의전당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김민정
- 연락처: (052)290-4272